

『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지역 내 기업 투자의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업유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조)
-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5조의4)
-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2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,

-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유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주정착금 지원에 관한 사항, 산업단지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
- 이주정착금 및 임대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나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기업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,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수기업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